

## 학생지도 간담회 및 각종 동아리 행사 지원금에 대한 지침

제정 2009.03.17.  
 개정 2013.04.16.  
 개정 2015.01.21.  
 개정 2018.05.02.  
 개정 2018.10.24.

법학대학원 학생의 지도를 위한 간담회 경비 및 법학대학원의 각종 동아리 행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한다.

- 아 래 -

구 분	지 원 대 상	지 원 금 액	비 고
법학전문 대학원	지도학생, 수강생, 지도동아리 간담회 경비	매 학년도 60만원 이내	- 교수 1인당
일반대학원 법학과	지도학생, 수강생, 지도동아리 간담회 경비	매 학년도 60만원 이내	- 교수 1인당
공 통	학생 동아리 행사 경비	매 학년도 40만원 이내	- 각 동아리별
	법학대학원 동아리 중 정기 학술제 개최시 추가 행사 경비	매 학년도 20만원 이내	- 인쇄비 70만원 정도 별도 지원

학생 지도를 위한 간담회 경비는 원칙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 항목 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.

**부칙 <2009.3.17.>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13.4.16.>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15.1.21.>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8.5.2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8.10.24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